

1995. 8. 5.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충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 소설치 조례안
-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 충주시 의회의 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주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충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 7. 29. 충주시장

나. 회부일자 : 1995. 7. 29.

다. 상정일자 : 제 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 제 1차 총무위원회(1995. 8. 2.)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가. 제안이유

○ 농산물 도매시장 사업소 설치 승인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치 (제2조)

- 충주시 목행동 426-4번지

○ 업무 (제3조)

- 시설물 관리운영 및 도매시장 거래질서유지 등

○ 소장 (제4조)

-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 5급 상당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95. 7. 25일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행정조직을 간소화하고, 생산적인 체제로 개선해 나가고자 민간위탁을 전체로 시한부 존속 설립조건으로 인력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 1997. 6. 30일까지의 시한이 도래되면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는 계획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한시기구 및 정원을 조례로 정하였는 바,
- 사업소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로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안된 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질의요지

- 본 조례가 '97. 6. 30일까지 한시조례로 제정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

○ 답변요지

-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내무부지침이 내려 왔으며, 2년후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한시기구로 끝나고 민간위탁이 안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붙임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제1조(설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충주시 목행동 426 - 4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
3. 도매시장의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4.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
5. 도매시장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징수
6. 기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사항의 시행

제4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1997년 6월 30일 이를 폐지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 7. 29. 충주시장

나. 회부일자 : 1995. 7. 29.

다. 상정일자 : 제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1995. 8. 2.)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가. 제안이유

-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원승인 및 부단체장의 정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조정하고,
- 의회사무국 기구정원을 본청에서 분리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농산물판매시장의 순수 증가인원 1명과 한시정원 3명을 본청에서 이관 조정하고 부단체장의 정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조정됨에 따라 정원 1명 감원
-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본청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조목을 신설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소 정원 3명의 증원과 자원재활용 수거차량 운전원 2명이 청소과로 복귀됨에 따라 읍면동 정원 감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순수 증가인원 1명과 한시정원 3명은 본청 정원에서 이관 조정하였고, 위생환경사업의 기계 10등급 1명과, 수질환경 사업소 전기 10등급 1명을 차출하여 총 6명의 정원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보좌기능등 보강시행 지침에 의거 시·군별 부단체장 직급이 국가직으로 배정됨에 따라 지방적 본청 정원의 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 5.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 지침이 시달되어 본청에 포함되어 있는 의회사무국 정원 조목을 분리 신설하는 등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승인 및 시달된 지침을 바탕으로 적법함은 물론 합당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질의요지

- 의회정원이 본청에서 분리되면 의회직원의 인사권은?

○ 답변요지

-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고, 본청, 읍면동을 별도 정원관리기관으로 하여 기관간 변동이 있을 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토론요지

○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불임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제2조 "본청. 소속기관"을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으로하고, 제1호 시본청 "525"명을 "504"명으로하고, "제2호 의회사무국 16명"을 신설하며, "제2호"직속기관을 "제3호"로하고, "제3호"사업소를 "제4호"로하여 "161"명을 "168"명으로하고, "제4호"음연동을 "제5호"로하여 "551"명을 "549"명으로 한다.

제3조 "본청. 소속기관"을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으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부단체장의 정원은 1995. 7.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사업소에 두는 정원중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원 6명의 존속기한은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제2조 “본청. 소속기관”을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으로하고, 제1호 시본청 “525”명을 “504”명으로하고, “제2호 의회사무국 16명”을 신설하며, “제2호”직속기관을 “제3호”로하고, “제3호”사업소를 “제4호”로하여 “161”명을 “168”명으로하고, “제4호”읍면동을 “제5호”로하여 “551”명을 “549”명으로 한다.

제3조 “본청. 소속기관”을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으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단체장의 정원은 1995.7.1일부터 적용한다.
- ② (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사업소에 두는 정원중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원 6명의 존속기한은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 7. 25. 충주시 장

나. 회부일자 : 1995. 7. 25.

다. 상정일자 : 제 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 제 1차 총무위원회(1995. 8. 2.)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가. 제안이유

○ 금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원료됨에 따라 신설도로를 경계로 동간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조정하므로서, 주민의 편의도모 및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동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금능택지개발지구내 교현 2동 일부($41,201m^2$)를 금능동 일부($56,317m^2$) 연수동 일부($36,608m^2$) 지역을 칠금동으로 편입하고,
- 연수동 일부($5,489m^2$) 지역을 교현 2동으로 편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간경계 조정에 대하여는 '95. 4. 7일 충청북도지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 당초 금능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당초 대부분 소하천이나 전,답의 모형과 같이 자연형태대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현재는 종전의 동간경계선이 식별되지 않을 뿐더러,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집터 하나가 2개 동으로 양분될 수 있는 모순이 발생됨.
- 따라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행정업무수행에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설도로를 중심으로 동행정구역을 변경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질의요지
 -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주민이 전혀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지주들에게 안내(홍보)를 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 사례는?
 - 읍.면.동간 경계가 불분명 지역이 많으며,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이라도 주민편의를 위해 변경 조정할 계획은?
- 답변요지
 - 현 지역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일괄 구획정리를 한 지역으로 개인소유분은 없음.
 - 전 지역을 일제히 조사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지번변경 및 등기등의 절차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불임

○ 충주시읍연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충주시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제1조(관할구역조정) ① 충주시 교현동 관할구역에 연수동 일부지역을, 칠금동 관할구역에 교현동, 금농동, 연수동 일부지역을 별표와 같이 편입한다.

② 충주시 교현동, 금농동, 연수동의 관할구역중 제 1항의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 7. 25. 충주시장
나. 회부일자 : 1995. 7. 25.
다. 상정일자 : 제 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 제 1차 총무위원회(1995. 8. 2.)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가. 제안이유

- '95. 3.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5. 7. 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보상금지급기준 용어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
○ 보상금 지급후 보상금지급등급이 변경될 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조항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32조를 비롯한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개정으로 의원의 의정 활동비등의 지급기준에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변경과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을 보면 개정하므로서, 1차보상을 받은 후 상해의 정도가 차등이 있거나 사망의 경우에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의회에 출무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적용규정은?

○ 답변요지

- 지방자치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공무원과 같이 출무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불의

○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증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7. 1일부터
적용한다.

충주시공인조례증 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 7. 25. 충주시장

나. 회부일자 : 1995. 7. 25.

다. 상정일자 : 제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1995. 8. 2.)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시 및 읍·면·동간에 모사전승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불편해소 및 주민편의도모를 위해 중계민원용 공인의 신조, 비자, 사용범위를 확대 실시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중계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중계민원 사무처리를 공인의 비자 및 사용범위를 "읍·면"에서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고, 공인교부신청서식과 공인 대장양식의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등으로 중계민원처리를 할 수 있으며,
- 현재까지 읍.면간에는 팩시밀리를 통하여 중계 민원사무(호적사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에는 공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음.
- 앞으로, 공인조례 개정으로 동에서도 읍.면.동장의 공인을 신조 비치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동에서도 모사전송을 통하여 호적사무를 수탁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에게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각종 민원사무의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개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4. 질의.답변요지

- " 없 음 "

5. 토론요지

-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불임

- 충주시공인조례증 개정조례안

충주시 공인 조례 증개정 조례안

충주시 공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⑤ 시장과 읍·면·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면의 도모를 위하여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시 본청 및 읍·면·동간의 팩시밀리를 통한 민원사무를 위·수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읍·면·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증계민원사무임을 "(시·읍·면·동) 민원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증 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 7. 25. 충주시장
나. 회부일자 : 1995. 7. 25.
다. 삼정일자 : 제 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 제 1차 총무위원회(1995. 8. 2.)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과장)

가. 제안이유

-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사무중 읍·면·동 위임사무를 확대하여 행정성 능률제고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추가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 내무부에서 '91. 2. 22일자 시달된 시·군·구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준칙안은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임에도 위임이 불허되고 있어 불합리한 준칙으로 분석되며,

- 타 시도의 건의에 따라 내무부에서 정정 회시공문이 시달되어 과태료부과징수 업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현재 내부위임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과태료부과징수사무에 대하여는 권한 위임하므로서, 원활한 업무추진과 책임행정구현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 없 음 "

5. 토론요지

-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불임

-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증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충주시내부위임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와 [별표3]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